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9.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1. 8. 31.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1. 9. 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건축과장

### 가. 제안이유

- 법령에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성별영향평가 권고 의견을 반영하여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외부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규정 마련 (안 제10조제2항제1호)
- 이의신청 등 규정 삭제(안 제14조)

## 3. 검토보고 (신준호 전문위원)

### ○ 조례 개정 배경 및 조문 검토

-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4조는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심의 사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르고자 삭제하는 것임.

### ○ 종합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별 고려 조문을 신설하였고, 민원인의 이의 신청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고자 조례의 권리제한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 관계법령과의 구조적 정합성과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의 개정활동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